서울특별시 아리수 음수대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윤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300

발의년월일 : 2016년 7월 19일

발 의 자 : 이윤희·진두생·문종철·김창수·

유 용·김광수(도봉)·유광상· 김희걸·맹진영·성백진·송재형· 김기대·오경확·박성숙·최영수·

김동율·김선갑·서영진 의원

(18명)

1. 제안이유

음수대를 설치하여 사용 중인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및 「유아 교육법」 제7조에 따른 국공립 유치원에 대해서는 수도요금을 감면해 주고 있으며, 경미한 고장이 발생하는 경우 이 감면액을 이용하여 해당 기관은 용역 또는 자체적으로 음수대를 관리하고 있음.

한편 자체 관리보다는 용역을 통한 관리 시 지적률이 더 낮게 나오고 있고 상당수 학교의 경우 수도요금 감면 없이 음수대 유지관리를 상수도 사업본부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요구를 조례에 반영 하여 효과적인 음수대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서울특별시 수도조례」제31조제1항제6호에 따른 수도요금 감면 대상 중 음수대 유지관리 업무를 시장과 협의하여 위임하는 경우 수도요금 감면대상에서 제외함(안 제9조제5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서울특별시 수도조례」제31조

나. 예산조치 : 관련 부서 협의

다.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2)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별첨

서울특별시 아리수 음수대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아리수 음수대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 중 "「서울특별시 수도조례」"를 "「서울특별시 수도조례」(이하 "수도조례"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수도조례 제31조제1항제6호에 따른 수도요금 감면 대상은 음수대의 정기적인 유지관리 업무를 시장과 협의하여 위임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수도요금 감면 대상에서 제외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관리) ① ~ ③ (생 략)	제9조(관리)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에 따른 음수대의 청소 등 위생관리,	4
고장 및 철거 등에 대한 조치가 제대로 이	
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u>「서울특별시</u>	「 <u>서울특별시</u>
수도조례」 제31조제1항제6호에 따른 수도	수도조례」(이하 "수도조례"라 한다)
요금 감면을 철회할 수 있다.	
〈신 설〉	⑤ 수도조례 제31조제1항제6호에 따른
	수도요금 감면 대상은 음수대의 정기적인
	유지관리 업무를 시장과 협의하여 위임
	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수도요금
	감면 대상에서 제외한다.

서울특별시 아리수 음수대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

3. 미첨부 사유

- 서울특별시 아리수 음수대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9조 제5항에서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31조제1항제6호에 따른 수도요금 감면 대상은 음수대의 정기적인 유지관리 업무를 시장과 협의하여 위임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수도요금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라고 규정한 바, 수도 요금 감면대상 제외에 따른 환수 수입이 발생하고 감면제외 대상에 대한 상수도 본부의 음수대 위탁 관리에 따른 비용이 발생하나.
- 순비용추계결과 순수입이 발생하므로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4. 작성자

이 윤 희 의원